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구 미 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5. 1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보고이유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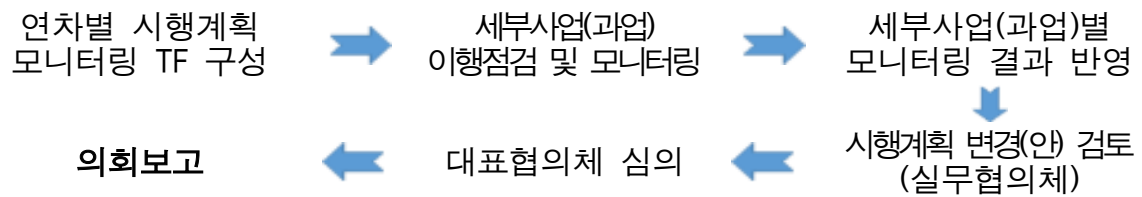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38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
-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

○ 필요성 : 법정계획

다. 계획 변경 과정



라. 세부추진일정

연번	시기	내용	비고
1	2025. 4~7월	▶ 이행점검 모니터링 TF 구성 (34명)	
2		▶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실시 및 관리카드 검토	
3		▶ TF 종합 검토 및 변경(안) 마련	
4	8~9월	▶ 실무협의체 검토 및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	
5	11~12월	▶ 의회 보고	
6		▶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도 제출	

마. 2025년 당초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변경내용

구분	대표적 변경사례 및 사유	비고
예 산	<p>▶ I -2-3 아이 행복 도우미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 3,849백만원 - 변경 후 : 3,980백만원 <p>☞ 변경사유 : 행복도우미 추가 채용에 따른 증액</p>	23건
성과목표	<p>▶ I -2-4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 300명 - 변경 후 : 350명 <p>☞ 변경사유 : 수요 증가에 따른 목표 상향</p>	8건
성과지표	<p>▶ I -3-4 장애인 긴급돌보미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 서비스 이용 실적(명) - 변경 후 : 서비스 이용 건수(건) <p>☞ 변경사유 : 명확한 성과 측정을 위해 변경</p>	2건
기 타 (사업명 2) (지원대상 3) (사업내용 2)	<p>▶ I -3-9 청소년 위기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 ‘마음, 봄’ 프로그램, 고위기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 변경 후 : 청소년 동반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p>☞ 변경사유 : 기존 사업 보완을 위한 사업 추가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p>	7건
신 규	<p>▶ I -3-10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p> <p>☞ 지역 특성(고위험 신생아, 조산아, 미숙아 치료시설 부족) 대응</p>	2건
	<p>▶ I -3-11 스마트 돌봄 서비스 통합관제·출동 시스템 운영</p> <p>☞ 구미형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p>	

바.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 4개 사회보장전략 30개 세부사업 (8개 중점추진사업)

연번	전략	세부사업명	비고
1	사회보장 전략 1 (안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중점
2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는 구미 희망 더하기 사업	중점
3		세이프티(Safety) 존(Zone) 설치	
4		안심 택배 보관함 운영	
5		찾아가는 이동 건강 버스 운영(찾아가는 행복병원)	
6		사회참여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	
7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사업	
8	사회보장 전략 2 (일자리)	구미형 청년 일자리 사업(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중점
9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중점
10		아이 행복 도우미 사업	
11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12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13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	
14		구미50+센터 구축 및 운영	
15	사회보장 전략 3 (돌봄체계)	아픈 아이 돌봄센터 운영	중점
16		육아공동체 자녀 돌봄 품앗이 활성화 사업	중점
17		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18		인공지능(AI) 반려로봇 효돌이 관리 운영	
19		마을공동체 노인돌봄 사업	
20		청년 고민상담소 운영	
21		청소년 위기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	
22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신규
23		스마트 돌봄 서비스 통합관제·출동 시스템 운영	신규
24	사회보장 전략 4 (교육문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중점
25		자원봉사대학 운영	중점
26		세대공감 구미독서문화, 구독	
27		구미시 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	
28		구미 복지서비스전 운영	
29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운영	
30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 운영	

사.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과업

▷ 4개 지역발전전략 8개 대표과업 16개 세부과업

연번	전략	대표과업명	세부과업명	비고
1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4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5	지역발전 전략 2 (민관협력)	대표과업 1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행복온(溫/ON)마을 만들기 사업	
6			구미시가족자원봉사단 운영	
7		대표과업 2 (민간자원 활용)	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8			공유냉장고 운영	
9	지역발전 전략 3 (거버넌스)	대표과업 1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기능 강화	
10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역량강화	
11		대표과업 2 (읍면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12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 보고회	
13	지역발전 전략 4 (인프라)	대표과업 2 (시설 인프라)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도서관 건립	
14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운영	
15		대표과업 2 (시설 외 인프라)	공공부문 사회복지전문인력 충원	
16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 (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과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이 정 화
	팀 장	이 현 숙
	담 당 자	손 윤 준 (480-5102)